



지방자치 정책 Brief



308-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성과관리가 필요하다

김성주 연구위원

주요내용

성과관리의 한계가 있는 교육기관 보조금

- 2016년도 결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, 다음 해의 예산에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음
- 그러나 교육청이나 지원청, 각급 학교로 지원되고 있는 교육기관 보조사업의 경우는 보조금만 지원할 뿐 목적인 바 및 용도에 맞게 지출되었는지, 사업의 성과는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들이 지적되어 오고 있음

교육자치에 따른 한 지역 두 기관 자치의 한계

-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보조된 사업의 성과관리 문제는 교육자치에 따라 한 지역, 같은 주민에 대해 두 개의 기관(지방자치단체, 교육청)이 각자 행정을 하지만 교육청의 경우 과세권이 없고 지출권만 있다 보니, 세입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함에 따른 한계라고 할 수 있음
-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각급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입장에서도 자체 회계시스템이나 감사를 받고 있음에 따라 전체 공공재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관점에서는 취약한 부분임
-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이나 학교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성과평가는 물론 숫자적 정산 외에 구체적 지출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향후 교육기관 보조금이나 공동사업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성과 관리가 필요함

공공재정이라는 큰 틀에서 교육기관 보조금의 성과관리가 매우 중요

-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모든 사업은 매년 의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교육기관 보조금 사업 또한 사후 성과평가가 실시되어야 함
- 교육기관 보조사업의 성과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 제4항 교육기관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임의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
- 학교 등 예산을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쪼개진 사업으로 인해 좀 더 큰 목적의 효과적인 지출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, 교육기관 보조사업, 교육청의 자체사업(교육과정 등 고유의 교육청 사업 제외) 등에 대한 사전, 사후 사업내용 및 지출자료 공유가 요구됨

01

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개념 및 현황



308-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란?

-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는 법률에 따라 재원의 규모가 정해지는 법정전출금과 법률에 전출 근거는 있으나 규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 규모가 정해지는 비법정전출금으로 나뉘어짐
- 308-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통계목상 법정전출금을 제외한 교육기관에 지출되는 보조금 즉, 비법정전출금을 의미함

▮ 법정전출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내역 ▮

| 구분 | 부담금 | 근거법령 |
|--------|-----------|---|
| 광역자치단체 | 공공도서관 운영비 | 「도서관법」 제29조 제2,3항 |
| | 학교 급식비 | 「학교급식법」 제8조 제4항 |
| | 기타 교육지원금 |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 제9항 |
| | 교육경비보조금 | 「지방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 제8항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」 제1조 |
| 기초자치단체 | 학교급식비 | 「학교급식법」 제8조 제4항 |
| | 교육경비보조금 |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 제8항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」 제1조 |

자료: 하봉운(2022), '교육청-타분야 공동사업비 제도 운영방안' 일부 수정



308-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(비법정전출금)의 추이

- 지방자치단체의 법정과 비법정전출금의 결산액 규모를 살펴보면, 2016년 약 12조원 규모에서 2018년 16조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약 14조원으로 매년 등락은 있으나 단기간에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- 이 중 비법정전출금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9년과 2020년에는 전체 전출금 중 10%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

▮ 지방자치단체의 법정, 비법정 전출금 추이 ▮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| 합계 | 법정전출금 | | 비법정전출금 |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| | | 비중 | | 비중 |
| 2020 | 14,156,109 | 12,622,275 | (89.2) | 1,533,834 | (10.8) |
| 2019 | 13,928,549 | 12,256,805 | (88.0) | 1,671,744 | (12.0) |
| 2018 | 16,261,645 | 14,989,603 | (92.2) | 1,272,043 | (7.8) |
| 2017 | 12,921,887 | 11,821,052 | (91.5) | 1,100,836 | (8.5) |
| 2016 | 11,914,161 | 11,037,487 | (92.6) | 876,674 | (7.4) |

주: 각 년도 결산 기준

자료: 지방재정365)교육비특별회계

02

성과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기관 보조금



성과관리의 한계가 있는 교육기관 보조금

- 2016년도 결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, 다음 해의 예산에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음
- 그러나 교육청이나 지원청, 각급 학교로 지원되고 있는 교육기관 보조사업의 경우는 보조금만 지원할 뿐 목적한 바 및 용도에 맞게 지출되었는지, 사업의 성과는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들이 지적되어 오고 있음

(□□시의 교육담당자)

“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,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, 교육비특별회계, 교육경비 보조금 등 재원부담 주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. 따라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전체적인 파악이 어렵고, 교육경비 보조금과 혼용 사용 시 확인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.”

(△△시의 교육담당자)

“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의 경우 교육청에서 정산하여 보내온 정산서에 대한 숫자적 확인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업별 정산 내용을 건별로 확인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.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축하여 재원별 사업 추진이 시스템으로 관리된다면 연차별 사업관리와 사업 추진 과정의 중간 점검 및 정산 확인이 편리할 것입니다.”

- ○○군에서도 광역지자체에 건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“교육협력지구사업은 공동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없이 교육청이 단독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보조금 지급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사업에 관여하거나 의견을 낼 수 없다”라는 의견도 있음



교육자치에 따른 한 지역 두 기관 자치의 한계

-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보조된 사업의 성과관리 문제는 교육자치제도에 따라 한 지역, 같은 주민에 대해 두 개의 기관(지방자치단체, 교육청)이 각자 행정을 하지만 교육청의 경우 과세권이 없고 지출권만 있다 보니, 세입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함에 따른 한계라고 할 수 있음
 - 즉,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사업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, 일반 재정사업이나 보조사업과는 달리 또 한편의 자치를 하고 있는 교육청 등에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기관인 교육청에 관련 서류나 결과물 등의 요구를 강하게 할 수 없음
-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각급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입장에서도 자체 회계시스템이나 감사를 받고 있음에 따라 전체 공공재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관점에서는 취약한 부분임

- 이상과 같이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이나 학교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성과평가는 물론 숫자적 정산 외에 구체적 지출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향후 교육기관 보조금이나 공동사업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성과관리가 필요함

03

교육기관 보조금의 성과관리 방향

- 공공재정이라는 큰 틀에서 교육기관 보조금의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매우 중요함
 -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모든 주요재정사업, 민간위탁사업,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의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교육기관 보조금 사업 또한 국민과 지역주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임에 따라 반드시 사후 성과평가가 실시되어야 함
 - 국민과 지방 주민의 세금이 계획대로 쓰였는지, 예산을 쓴 효과는 있었는지, 다음 해의 사업에는 어떠한 내용을 환류시킬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
- 교육기관 보조사업의 성과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
 - 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안부 예규 221호) 제28조 제4항에서는 교육기관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선택적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
-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서로 다른 집행기준, 비슷한 목적의 다수 사업 등 교육사업 경비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방안의 모색이 요구됨
 - 자치를 하고 있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에 예산 전출 의무가 있고, 교육기관 사업에 대해 적게는 지방세의 10% 많게는 30%까지 보조토록 하고 있지만, 집행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서로의 사업내용을 파악하지 못함에 따른 비슷한 목적의 다수 사업 문제가 있음
 - 이에 학교 등 예산을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쪼개진 사업으로 인해 좀 더 큰 목적의 효과적인 지출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, 교육기관 보조사업, 교육청의 자체사업(교육과정 등 고유의 교육청 사업 제외) 등에 대한 사업내용 공유가 요구됨

참고문헌

하봉운(2022) 교육청-타분야 공동사업비제도 운영방안. 부산시교육청 전문가토론회 발제자료.
지방재정 365 <https://lofin.mois.go.kr/portal/main.do>.

내용문의

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 연구위원(033-769-9874, sjkim@krila.re.kr)

지난호
보기